

의안번호	2205493
의 퇴 인	이수진의원
회 답 일	2024.11.26.
추계번호	24C5165
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 (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)	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(제2호) 9. 보건의료인력 대체인력의 관리 및 지원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7조 (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 보건의료인력 대체인력의 관리 및 지원을 수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○ (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) 동법 제17조¹⁾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(이하 “인력지원전문기관”)을 지정할 수 있으며,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건의료자원실이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2024년 기준 5억 5,100만원의 운영비를 배정받음

－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주요 업무는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·운영, 의료현장 내 보건의료인력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 운영, 보건의료인력통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, 공공·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사업 운영 등임

1) 제17조(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- **(보건의료인력)**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인(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, 간호사), 간호조무사, 약사, 한약사, 의료기사, 보건의료정보관리사, 안경사, 응급구조사, 영양사, 위생사, 보건교육사 등 15개 직역을 말함
- 현재 보건의료인력 대체인력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대한간호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위탁 수행하고 있는 “간호인력 취업지원” 사업이 유일함
 - 대한간호협회는 취업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유휴간호사 재취업 교육, 예비간호사 진로교육, 유휴·예비간호사 취업 연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, 2024년 기준 예산 30억 4,800만원이 배정됨
 - 대한병원협회는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과 수급 개선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예산 2억 7,900만원이 배정됨
- 추가로, 2025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‘간호조무사 대체인력 지원사업’이 신규사업으로 의결되었으나,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외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대체인력 관리·지원 사업은 부재하므로 이를 인력지원전문기관이 수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‘간호조무사 대체인력 지원사업’은 시범사업(서울, 경기, 인천)으로 운영될 예정이며, 단기간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파견으로 간호조무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휴가를 보장하고자 함(2025년 기준 5억 3,200만원 배정)
- 다만, 추가재정소요는 대체인력의 관리 및 지원사업의 유형과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건의료인력 유형별로 사업 규모와 유형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나, 현시점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
 -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추후 ‘간호조무사 대체인력 지원사업’을 실시하고 사업 평가를 실시한 후에 개정안에 따른 사업을 구체화하고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